

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약관명 :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

■개정 시행일 : 2025년 2월 26일 (수)

■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: 적용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 1 조 ~ 제 20 조 <생략></p> <p>제 21 조 약관의 변경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 (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“<u>약관 등</u>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<u>약관 등</u>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 <u>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은행은 <u>약관 등</u>을 변경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<u>약관 등</u>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 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을 다음 각 호 중 1개(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)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, 제 1호 내지 제 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<u>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</u>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p>1~6 <생략></p> <p>③~⑤ <생략></p>	<p>제 1 조 ~ 제 20 조 <좌동></p> <p>제 21 조 약관의 변경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 (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“<u>약관 등</u>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<u>약관 등</u>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법령의 개정,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(명령)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</u></p> <p><u>2.약관등의 개정이 거래처에 유리한 경우</u></p> <p><u>3.변경 전 내용이 기존 거래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</u></p> <p><u>4.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</u></p> <p>② 은행은 <u>약관 등</u>을 변경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<u>약관 등</u>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 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을 다음 각 호 중 1개(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)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, 제 1호 내지 제 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<u>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p>1~6 <좌동></p> <p>③~⑤ <좌동></p>	<p>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0조 약관의 변경시 즉시 게시 또는 공고 조항 신설 반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 22 조 ~ 제 26 조 <생략></p> <p><부칙 1> ~ <부칙 10> <생략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 22 조 ~ 제 26 조 <좌동></p> <p><부칙 1> ~ <부칙 10> <좌동></p> <p><u><부칙 11></u> <u>이 약관은 2025.02.26 부터 적용합니다.</u></p>	